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「지방재정법」개정('14. 11. 29 시행)에 따라 성주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 ○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 개정(안 제1조)
 -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 ⇒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(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)
 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)
 -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을 준용

3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 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15. 10.22 ~ 11. 11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구성 등은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에 따른다.

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및 동법시행령 제68조”를 “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에 따라 ----------.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 등은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3에 따른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 략)	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② ----------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	1. ----------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